

내부고발제도

제 1절- (개요)

1. (목적)

이엔알해운항공(주)(이하 '회사')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 절차를 규정하므로 부패 행위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(적용범위)

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회사의 전 거래업체(화주, 관세사, 보세운송업자, 선사, 항공사, 창고업자, 기타 용역공급업체)를 대상으로 한다.

3. (책임과 권한)

회사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.

구분	책임과 권한
대표이사	1. 내부고발 신고 접수 2. 내부고발제도 포상 및 징계 주관
수출입관리책임자	1. 내부고발제도 활성화

제2 절- (내부고발제도)

4. (대상)

모든 임·직원은 누구든지 윤리경영방침을 저해하는 행위를 식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내부고발을 실시하여야 한다.

5. (고발자 성실의무)

내부 고발자는 고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6. (고발 방법)

6.1 부패행위 고발은 내부 고발자의 인적 사항과 고발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고발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. 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가. 전화: 010-3719-9686

나. 이메일: joseph98@enr.co.kr

7. (처리)

8.1 대표이사는 접수한 내부 고발 사항을 확인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8.1.1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, 고발의 취지 등

8.1.2 고발내용의 진위 여부

8.2 대표이사는 목차 8.1의 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1:1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.

8.3 대표이사는 내부 고발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실시할 수 있다.

8.(신분 보장)

8.1 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고발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8.2 누구든지 내부 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각종 피해를 받은 경우,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8.3 내부 고발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.

9. (포상 및 징계)

9.1 내부 고발에 의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, 내부 고발자에게는 'AEO 수출입안전관리절차서 No.7 인사총무' 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9.2 내부 고발에 따라 부패행위가 발견된 임·직원의 경우에는 'AEO 수출입안전관리절차서 No.7 인사총무'에 따라 징계를 실시한다.

11. (내부고발제도공시)

내부고발제도는 회사의 모든 임·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시, E-mail 회람 등을 통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2. (소급효)

동 절차에 의하여 내부 고발을 하는 자는 동 규정의 제정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도 신고를 할 수 있다.